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43579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
용인시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주식회사
용인시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변 론 종 결 2010. 11. 23.
판 결 선 고 2010. 1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50,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윤▲▲은 2002. 10.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주차장용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쓴다.)를 1,200,100,000원에 분양받아 그 무렵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바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않았다.

나. 김○○은 2003년 9월경 ㄱ+ㄱ옥의 소개로 윤▲▲을 알게 되어 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940,1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상에 주차빌딩 상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차빌딩이라고 쓴다.)을 신축·분양하려고 하였다.

다. 윤▲▲은 2004. 3. 11. 원고 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ㄴ+ㄴ건설링 주식회사였는데 2005. 10.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설립 당시 주주는 윤▲▲(4,000주), ○○식(윤▲▲의 매제, 3,000주, 이사), ♣♣경(ㄱ+ㄱ옥의 처, 3,000주, 감사)으로 되어 있었으나 ○○식, ♣♣경은 명의상 주주로서 윤▲▲이 실질적 주주였다.

라. 김○○과 윤▲▲은 2004. 11. 13. 김○○이 윤▲▲으로부터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주차빌딩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윤▲▲에 대한 채무(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분양대행보증금반환 등 채무)를 이 사건 주차빌딩의 상가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윤▲▲은 윤▲▲ 명의의 주식(4,000주)은 ㄱ+ㄱ옥에게, ○○식 명의의 주식(3,000주)은 김○○의 인척인 ㄱ+ㄱ철에게,

♠♠경 명의의 주식(3,000주)은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ㅎㅎ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ㅎㅎ라고 쓴다.)의 직원인 백○○에게 각 이전하였다.

마. 그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ㄱㄱ옥이었으나 김○○이 대표이사 및 이사 백○○, 감사 한○○ 등을 지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ㄱㄱ옥이 2005. 5. 18. 원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같은 날 백○○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김○○의 친구인 ㄴㄴ균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그 무렵 ㄱㄱ옥의 주식(4,000주) 중 3,000주는 김○○에게, 1,000주는 백○○에게, ㄱㄱ철의 주식(3,000주)은 한○○에게 각 이전되었다(이로써 원고 회사의 주주현황은, 백○○ 4,000주, 김○○ 3,000주, 한○○ 3,000주가 됨).

바. 김○○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원고 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백○○의 제안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은 2005. 6. 13. 자신에게 보통주식 12,000주의, 김○○과 한○○에게 각 보통주식 9,000주씩의 각 신주를 배정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2005. 6. 16. ㅎㅎ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위 3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여 증자를 마친 후 위 납입금을 다시 인출하였다(이로써 원고 회사의 주주현황은, 백○○ 16,000주, 김○○ 12,000주, 한○○ 12,000주가 됨).

사. 한편, 김○○은 2005. 12.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백○○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백○○이 대표이사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김○○과 백○○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김○○은 2006. 3. 24. 백○○, 한○○에게 원고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 2인이 주식 이전을 거부하자 2006. 4. 5. 위 2인을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2006. 5. 30. 위 2인 및 원고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9975호로 자신이 위 2인 명의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아. 김○○과 백○○은 위와 같은 대립 중에 2006. 6. 2. 백○○이 보유하거나 그가 위임받은 원고 회사의 주식을 3,15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회사가 신축 중인 평택시를 대물변제하는 등의 합의(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의라고 쓴다.)를 하였으나, 김○○은 이 사건 합의 직후부터 그 무효를 주장하다가 2006. 6. 23. 백○○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취소, 해제를 통보하였다.

자. 백○○은 2006. 6. 8. 피고 회사를 설립(대표이사로 ○○식을, 이사로 ■■기를, 감사로 ■■범을 각 세움)하고, 2006. 6. 14. 한편으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식을 대신하여, 위 두 회사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차빌딩을 매매대금 10,336,685,862원에 매도하되, 그 중 10,286,685,862원은 이 사건 주차빌딩의 신축 및 분양 관련 채무(9,446,655,862원)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용자금채무(840,030,000원)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계약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쓴다.),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 회사 설립서 납입한 주금 50,000,000원을 원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 회사에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 주식회사 ΩΩ엠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타경3003호로 원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주차빌딩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08. 4. 18. 이 사건 주차빌딩은 구분건물로 분할되어 원고 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카. 피고 회사도 이 사건 주차빌딩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카합10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 4. 18. 접수 제16××호로 위 법원 2008타경3003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피고 회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경료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08. 7. 11.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인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1155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아래에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쓴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차빌딩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② 또한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의 1인 회사이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회사와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대전고등법원 2009나593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파. 원고 회사는 2008. 9. 19. 변호사 김○○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을 위임하였는데, 착수금 3,300,000원, 성공보수로 55,000,000원(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지급함) 합계 58,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 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패소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그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상법상의 절차위반 때문이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실체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부당가처분 또는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부당가처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이 이 사건 합의 직후부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였던 점, 백○○은 위 합의 직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김○○이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찾아가기 전에 이 사건 토지와 주차빌딩을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백○○이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기보다는 1인 주주인 김○○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반대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생략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1인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백○○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가처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위임자와 수임자인 변호사와의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금액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069 판결), 그 보수액이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이는 경우 그 금원이 성공보수 명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는 소송의 청구금액과 승소금액, 그 소송의 난이 및 진행상황,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물가액이 1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 회사가 전부 승소한 사실, 이 사건 본안소송은 3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물 가액 및 승소금액,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변호인 사이의 약정 보수인 58,300,000원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8,300,000원에서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였음을 원고 회사가 자인하는 13,249,225원을 차감한 45,650,033원(= 58,300,000원 - 13,249,2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7.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섭 _____